

2026년도 수시분(2차)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2828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6. 6. 8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사유

○ 친환경 목조전망대 신축안

- 비슬산과 낙동강의 조망권 확보가 용이한 지점에 친환경 목조전망대를 건립하여, 대구의 상징적 관광 거점 및 랜드마크로 육성하고자 함.
- 목재 활용 건축을 통해 정부의 탄소 중립 및 저감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, 시민 체감형 목재 문화 향유 공간을 조성하여 친환경 가치를 확산하고자 함.
- 도깨비시장, 도동서원, 송해공원, 비슬산 등 지역 관광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'관광 벨트'를 구축하여 연간 1,000만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친환경 목조전망대 신축안

- 사업명 : 친환경 목조전망대 신축
- 위치 : 현풍읍 성하리 378 (하동근린공원 內)
- 규모 : 지상 3층, 건축면적 1,021㎡, 연면적 1,353㎡
- 사업기간 : 2026. 6. ~ 2027. 12.
- 주요시설

층 수	면 적(㎡)	내 부 시 설
3층	270	스카이워크 전망대
2층	325	전시실
1층	758	기계실, 휴게라운지, 사무실, 도서관 등
총계	1,353	

- 총사업비 : **130억 원** (국비 65, 시비 2, 군비 63)
 - 공사비 120억 원, 설계비 10억 원

※ 기준가격(대장가격)

- 전망대 신축(사업비) : 13,000,000,000원

- 추진상황

- 2024. 5. ~ 11. :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
- 2025. 3. : 사업 추진방침 수립
- 2025. 4. ~ 5. : 지방재정 투자심사
- 2025. 3. ~ 11. : 건축기획 용역 추진
- 2025. 10. ~ 12. : 건축설계 공모
- 2025. 12. ~ 2026. 6. :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
- 2026. 3. : 주민설명회 개최
- 2026. 4. ~ 10. : 사업구역 내 분묘 이장

- 향후 추진계획

- 2026. 6. : 실시설계용역 완료
- 2026. 6. ~ 7. :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
- 2026. 10 ~ 2027. 12. : 착공 및 준공

3. 관련법령

-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
-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 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
- 『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』 제12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

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

(단위: m², 백만원)

구 분			기 정			금 회			계			비고
			건수	면적	금액	건수	면적	금액	건수	면적	금액	
취득	계		19	125,140.18	149,627	1	1,353	13,000	20	126,493.18	162,627	
	매입	토지	10	104,319.5	78,978	-	-	-	10	104,319.5	78,978	
		건물	2	7,867.01	2,001	-	-	-	2	7,867.01	2,001	
	교환	토지	1	991.7	2,672	-	-	-	1	991.7	2,672	
		건물	1	323.22	31	-	-	-	1	323.22	31	
	신축	건물	5	11,638.75	65,945	1	1,353	13,000	6	12,991.75	78,945	
		공작물	-	-	-	-	-	-	-	-	-	
	기타	토지	-	-	-	-	-	-	-	-	-	
		건물	-	-	-	-	-	-	-	-	-	
	계		4	27,502.27	4,039.75	-	-	-	4	27,502.27	4,039.75	
처분	매각	토지	-	-	-	-	-	-	-	-	-	
		건물	-	-	-	-	-	-	-	-	-	
	교환	토지	1	20,724	2,442	-	-	-	1	20,724	2,442	
		건물	-	-	-	-	-	-	-	-	-	
	양여	토지	-	-	-	-	-	-	-	-	-	
		건물	-	-	-	-	-	-	-	-	-	
	기타	토지	-	-	-	-	-	-	-	-	-	
		건물	3	6,778.27	1,597.75	-	-	-	3	6,778.27	1,597.75	철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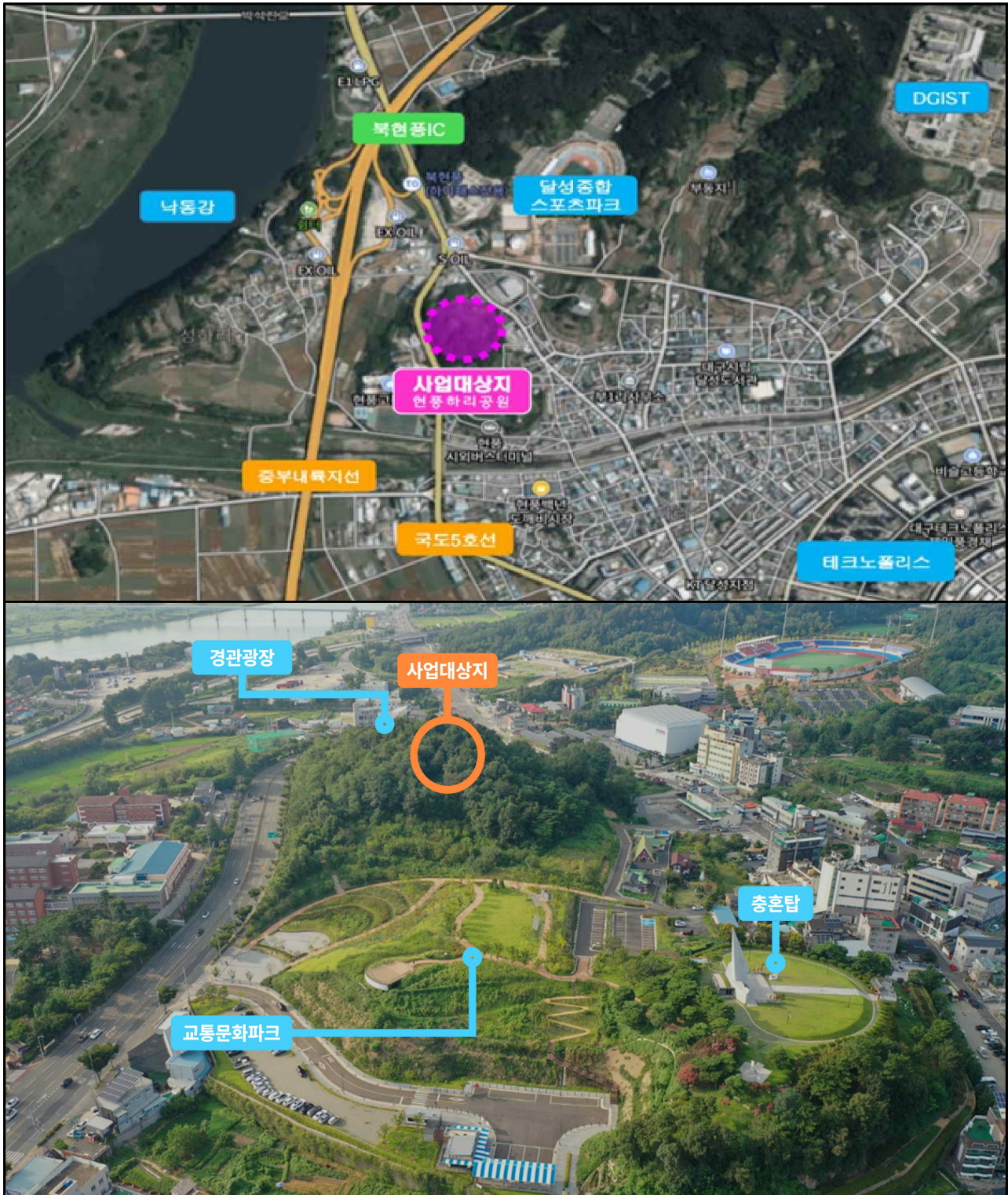
공유재산 취득 대상 재산목록

종 류	재 산 의 표 시		취득대상 면 적 (㎡)	기준가격(원)	취득 시기	취득 사유	주관 부서	비고
	소 재 지	면 적 (㎡)						
총 계		1,353	1,353	13,000,000,000				
건물	현풍읍 성하리 378	1,353 (연면적)	1,353 (연면적)	13,000,000,000 (사업비)	2027.12.	친환경 목조전망대 신축	산림과	신축

위 치 도

【달성군 친환경 목조전망대 신축】

□ 위치: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378



조 감 도

【친환경 목조전망대 신축】

□ 위치: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378

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

-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

제12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

-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“1건당 기준가격” 및 “1건당 기준면적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1건당 기준가격
- 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
- 나. 처분의 경우 : 10억원
2. 1건당 기준면적
- 가. 취득의 경우 : 1천제곱미터
- 나. 처분의 경우 : 2천제곱미터